

[재]인천여성가족재단 아이사랑꿈터 중구 2호점 보조인력(기간제근로자) 공개채용 재공고

재단법인 인천광역시 여성가족재단 아이사랑꿈터 중구 2호점 보조인력(기간제근로자) 공개채용 계획을 다음과 같이 재공고합니다.

2022년 1월 12일

재단법인 인천광역시 여성가족재단 대표이사

1. 모집분야 및 자격

채용분야	채용직급	인원	담당업무
아이사랑꿈터 보조인력 (기간제근로자)	운영요원	1명	<input checked="" type="radio"/> 아이사랑꿈터 운영보조 (이용자 응대, 문서관리, 시설안전 및 위생관리 등) ※ 담당업무는 업무분장에 따라 변동 가능

- 근무시간 : 주 20시간(일 4시간)/ 14:00~18:30(휴게시간 30분 포함)
 - 아이사랑꿈터 운영시간(화~토, 09:00~18:00) 내 근무시간 조정 가능
- 근무지 기본정보

군구	기관명	소재지	시설규모(m ²)
중구	2호점	인천광역시 중구 제물량로 113번길 16, 202호(신흥동 1가)	83.7

2. 응시자격 요건

- 공통사항
 - 성별 및 지역 제한 없음(병역필 또는 면제자)
 - 응시연령 : 만 18세 이상, 만60세 미만인 사람(공고일 기준)
 - 영유아보육법 제 16조, 20조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사람
 - (재)인천광역시여성가족재단 인사규정 제13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당하지 아니한 사람

○ 인천여성가족재단 「인사규정」 제13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9.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0.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1.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 * 근거 : 재단 「인사규정」 및 「지방출자·출연기관운영에관한법률」

- 아동학대 관련 범죄전력자 취업 제한

○ 임용자격기준(개별사항)

모집분야	임 용 자 격 기 준
아이사랑꿈터 보조인력 (운영요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보육교사 3급 자격을 취득하고 보육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 유치원 정교사 2급 이상○ 건강가정사○ 사회복지사○ 위 4가지 자격중 중 하나라도 소지한 육아코디네이터

3. 접수기간 및 접수처

- 접수기간 : 2022. 1. 17.(월) ~ 1. 21.(금) (5일간/주말 제외)
- 접 수 처 : 인천여성가족재단 3층 아이사랑꿈터 운영지원단
- 접수방법 : 방문 접수 또는 등기우편 (* 일반 우편접수는 받지 않습니다)
 - 접수 마감일 18:00까지 도착한 우편에 한함
 - * 재단 홈페이지 알림/참여마당 채용공고 게시판(응시원서 양식다운)
 - * 재단 응시원서 양식으로 작성 후 제출(응시원서 수정 금지)

4. 전형방법 및 일정

모집분야	1차 전형* (서류심사)	2차 전형** (면접심사)	최종합격자 선정
아이사랑꿈터 보조인력 (운영요원)	2022. 1. 25.(화)	2022. 1. 27.(목) 예정	2022. 1. 28.(금) 예정

- 서류전형 : 응시자의 자격 및 경력 등 적격 여부 판단

※ 서류전형 합격자는 재단 홈페이지 공고

- 면접시험 :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등 종합평가

모집분야	평정요소
아이사랑꿈터 보조인력 (운영요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검정

- 최종합격자 선정

모집분야	합격기준
아이사랑꿈터 보조인력 (운영요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면접심사결과 평점 60점 이상자 중 고득점 내림차순으로 합격자 결정

- 최종 합격자는 재단 홈페이지 공고 및 개별통보

☞ 상기 일정은 (재)인천여성가족재단 여건상 변경될 수도 있음

5. 제출서류

제출서류	제출여부
응시원서(별지1호 서식)	<input type="radio"/>
자기소개서(별지2호 서식)	<input type="radio"/>
개인정보제공동의서(별지3호 서식)	<input type="radio"/>
부패방지권익위법상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 관련 체크리스트(확인서)	<input type="radio"/>
경력증명서 및 자격증 사본(해당자)	<input type="radio"/>

※ 응시원서에 기재되는 자격사항 및 경력사항은 증빙서류 제출 시 인정

6. 보수 및 채용기간

- 기본급(연봉)
 - 월 1,011천원(4시간 근무기준)
 - ※ 아이사랑꿈터 설치 · 운영 지침(인천광역시) 기준 적용
 - ※ 수당 및 4대 보험 포함
- 채용기간 : 채용 시부터~위탁기간 만료 시까지(시용기간 3개월)

7. 기타사항

- 공고내용(응시인원, 응시자격, 채용일정 등)은 재단 내부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응시자 미달(채용예정인원보다 적거나 2배수에 미달한 경우)에 따른 공고는 취소 또는 재공고 될 수 있으며, 재공고시 응시자격을 포함한 최초 공고내용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응시원서상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 불능 등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불이익은 지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지원서 등을 허위로 기재하였거나 정해진 기한 내에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합격이 취소됩니다.
- 임용 전에 결격사유가 발생할 경우 임용이 불가하며, 임용된 후에도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임용이 취소됩니다.
- 채용과 관련하여 인사 청탁 등 부정한 방법이 발견될 경우 불합격 처리함은 물론 추후 입사지원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 채용 단계별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을 하지 않거나 취소될 수 있으며, 최종합격자가 임용등록 포기 혹은 결격사유로 인한 최종합격 취소 등이 발생하는 경우, 차순위자로 임용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호에 의거 최종 합격되지 못한 지원자는 채용여부가 확정된 날로부터 14일후부터 180일 이내에 응시관련 채용서류의 반환을 요청하여야 합니다. 위 기한 경과 시에는 반환 불가할 수도 있으니,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제8조 규정에 의거 홈페이지에 게시 후 휴대전화에 의한 문자전송, 전자우편, 팩스, 전화 등의 방법 중 1개 이상의 방법으로 응시자에게 통지할 예정이며, 미확인과 관련한 모든 책임은 응시자에게 있습니다.
-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채용절차 및 직무관련 : 아이사랑꿈터 운영지원단 강용환 ( 032-517-1965)

[별지 1호 서식]

응 시 원 서

1. 인적사항

지원분야	아이사랑꿈터 보조인력(운영요원)	※ 접수번호	2022-
성명	(한글)		
현주소			
연락처	(본인휴대폰)	전자우편	
	(비상연락처)		
병역사항	<input type="checkbox"/> 필 <input type="checkbox"/> 미필 <input type="checkbox"/> 면제 <input type="checkbox"/> 해당없음		

2. 학 위 (연구직에 한함.)

전 공 분 야	학위취득(예정)일	학 위 종 류
-	-	-

3. 교육사항 (지원분야 관련 과목 및 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 기재)

교육구분	과정명(전공) 및 교육내용
<input type="checkbox"/> 학교교육 <input type="checkbox"/> 직업훈련 <input type="checkbox"/> 기타	
<input type="checkbox"/> 학교교육 <input type="checkbox"/> 직업훈련 <input type="checkbox"/> 기타	

4. 자격사항 (지원분야 관련 기술/전문자격, 국가공인 민간자격 기재)

자격증명	발 급 기 관	취득일자	자격증명	발 급 기 관	취득일자

5. 경력사항

근무기관	근무기간	직위(직급)	담당업무

지원서상의 모든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증명하며, 만일 지원서상의 내용이 허위로 판명되어 합격 또는 입사가 취소되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작성일 2022년 월 일 / 지원자

(서명)

재단법인 인천광역시 여성가족재단 대표이사

[별지 2호 서식]

자 기 소 개 서

- ※ 출신지역, 가족관계, 학력 등을 암시하는 내용 기재 금지
 - ※ 지원 분야 관련 본인역량, 경험, 직무상황 대처능력 등을 중심으로 기재
 - ※ A4용지 3매 이내로 본인이 직접 작성 바랍니다.
(대리 작성, 허위 작성시에는 합격 취소 등 불이익 부과)

본인은 상기 사항에 허위사실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문 월 일

작성자 : (서명)

[별지 3호 서식]

개인정보 수집 · 이용·제공 동의서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휴대전화)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자격·경력사항, 병역사항 등 채용 관련 항목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	채용 제한사유 해당여부, 채용심사 관련 확인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채용 관련 목적을 달성할 경우 파기
개인정보 제공 동의 거부 권리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개인정보 수집 동의를 거부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을 경우 일정이 지연되거나 채용심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채용에 필요한 개인정보는 채용업무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습니다.▪ 사진은 부정방지를 위한 본인확인 용도로만 이용됩니다.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에 동의하십니까?(해당란에 <input checked="" type="checkbox"/> 표시)	
<input type="checkbox"/> 동의함 <input type="checkbox"/> 동의하지 않음	
년 월 일	
성명 : (서명)	
재단법인 인천광역시 여성가족재단 대표이사 귀하	

공공기관 직원 채용 전 확인사항

부패방지권익위법상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 관련 체크리스트(확인서)

-공공기관의 신규 직원 지원자(기간제 포함), 일자리창출사업 근로 지원자 작성용-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상 비위면직자등은 공공기관에의 취업이 제한되어(제82조) 이를 위반하여 취업할 경우 형사처벌(제89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및 해임요구(제83조)를 받게 되므로,
(채용, 공공근로) 지원시 본인이 대상자가 되는지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해당되는 문항 □에 체크>

1. 공직자로 재직한 경험이 있는지 여부 -----

※ 공직자 :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 제3호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과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자격 · 임용 · 교육훈련 · 복무 · 보수 · 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인정된 자,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장 및 그 직원

2. ‘공직자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적발된 사실이 있는지 (다만, 적발 시기는 재직중, 퇴직후 불문)

※ 부패행위 :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 제4호

- 가.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 나.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 · 관리 · 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 다. 가목과 나목에 따른 행위나 그 은폐를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

※ (예시) 성희롱, 성매매, 음주운전, 폭행, 단순업무상 과실, 복무위반, 불성실 → 부패행위 비해당
금품요구, 편의수수, 공금횡령, 공용물 사적사용, 수당 · 여비 부당수령 → 부패행위 해당

3-1. 해당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사실이 있는지

3-2. 현재 위 퇴직일(당연퇴직 · 파면 · 해임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았는지(5년내)

⇒ 취업제한대상자 해당(부패방지권익위법 제82조 제1항 제1호)

4-1. 해당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 선고를 받은 사실이 있는지

4-2.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된 날(또는 집행받지 않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았는지(5년내)

4-3. 권익위법('16.3.29. 제14145호로 개정된 것) 시행('16.9.30.) 이후 퇴직자인지 여부

⇒ 취업제한대상자 해당(부패방지권익위법 제82조 제1항 제2호, 부칙 제2조)

1, 2, 3-1, 3-2 (모두 충족) 취업제한대상자(제82조 제1항 제1호) 해당 여부 -----

1, 2, 4-1, 4-2, 4-3(모두 충족) 취업제한대상자(제82조 제1항 제2호) 해당 여부 -----

※ 해당 기재사항은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자료로만 활용됩니다(면접자료 등으로 활용 불가)

년 월 일
지 원 자

(서명)